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71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6. 21.
3. 회부연월일: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압류 등이 금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통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상 각종 급여²⁾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 또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되는 재산권³⁾의 성격을 지님.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⁵⁾

1) 「사학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학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3)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7.30. 2007헌바113)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한·정지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⁶⁾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서 원칙적으로 연금수급권에 대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사학연금도 「사학연금법」에서, 급여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6)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7)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한편,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 보장(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조항(제37조제1항)을 통해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임.¹⁰⁾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제34조제1항)하면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제34조제4항)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¹¹⁾

8) 「사학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9) 「양육비이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1.12.23. 2019헌마168)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함)」에서는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의 합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여,¹²⁾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¹³⁾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1.12.23. 2019헌마168)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2) 「양육비이행법」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양육비이행법」 제2조 각 호 내용 정리

- 양육부·모: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비양육부·모: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
- 양육비 채무: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
- 양육비 채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

1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은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사학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사학연금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을 사학연금 수급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사학연금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 수급권에 대해 양육비 채권을 이유로 압류가 가능해질 경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양육비 채권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조항의 위헌확인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기각 결정¹⁴⁾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마260)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 결정됨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동 결정에서 다수의견(5명)은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이 양육비 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으며,

소수의견(4명)에서도 압류금지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해당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2000년 결정¹⁵⁾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므로 압류금지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¹⁶⁾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양육비 채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압류금지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부분은 「사학연금법」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15)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0.3.30. 98헌마401)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사법상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6)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7.30. 2007헌바113)

다만, 양육비 채권을 사학연금 수급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예외적으로 제한·정지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¹⁷⁾과

「민사집행법」에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⁸⁾

또한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이후·시행 전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적용여부 등 개정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7) 「사회보장기본법」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¹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심사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자녀의 양육은 헌법상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인 동시에 부과된 의무라는 점에서 양육비 채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압류금지조항의 목적은 채권자로부터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양육비 채권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육비 채권 전액에 대한 급여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양육비 채권에 대한 급여 압류로 수급권자인 교직원이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적용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9) 의안번호 제2200776호, 2024.6.2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양육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현행 조항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와 양육비 채권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법」의 압류금지조항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9